

1. 개인명의계좌를 통한 외상매출채권 지체입금 및 관리 등 회계 부당처리

2. 제제대상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자기자본(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법정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과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0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함에도

가. 전(前) ◆◆ ●●●은 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출거래처 ○○○○(대표 ▲▲▲) 등 50개 업체로부터 2007.1.5.~2008.2.19. 기간 중 회수한 외상매출대금 294건 9억 23백만원을 조합 명의의 계좌에 즉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관리하면서 최단 2일, 최장 24일 지체하여 조합의 특별회계(내부예치금)에 정당 입금처리하였으며

* 주로 차량도색용 페인트를 페인트대리점으로부터 외상매입 후 차량 정비업체에 외상매출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취

나. 복지사업 관련 자금을 본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로 관리하면서 (주)▼▼▼(대표자 ♠♠♠)로부터 매입채무에 대한 상환

독촉이 있었으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복지사업회계의 상환
재원 부족과 복지사업한도* 초과로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추가 차입이
불가하자

복지사업한도 초과를 회피하면서 동 매입채무상환 문제를 해소코자
2006.12.29. 및 2007.7.6. 조합직원 ♥♥♥ 명의 대출 60백만원을 취급
하여 동 대출금으로 (주)▼▼▼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복지사업한도를 60백만원(자기자본 80백만원 대비 75%) 초과하였음
(2008.2.28. 직원명의 대출금 60백만원 전액 회수하였음)

* 2007.7.6. 현재 신용사업회계의 복지사업출연금은 80백만원임(복지
사업한도 : 80백만원)

3. 제제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제내용
직 원	감봉 : 1명

< 관련법규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4. 「회계업무방법서」 제5장 제2절